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47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철의, 최정윤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26.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14368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C가 2014. 8. 12. 피고에게 한 4,000만 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2쪽 5행의 ‘가. 원고는’을 ‘가. 원고의’로 고치고, 2쪽 19행 내지 21행을 “1)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 E은 2013. 12. 13. 당시 소외 회사에 2억 6,000만 원 상당의 차입금 상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8,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소외 회사에 통지하였다.”로 고친다.

나. 3쪽 [인정 근거]에 ‘갑23, 을2, 을3-1, 2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한다.

다. 4쪽 2행 내지 5행의 ‘채무의 본지에 다라’와 ‘채무의 본지에 다른’을 각각 ‘채무의 본지에 따라’와 ‘채무의 본지에 따른’으로 고친다.

라. 4쪽 14행 내지 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E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갑4, 갑10, 갑11, 갑18, 갑21, 갑2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⑤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소외 회사가 일부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은 2013. 12. 13. 소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액 2억 6,000만 원 중 8,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를 전후하여 위 2억 6,000만 원 중 별도로 변제받은 금액은 없다.

② 소외 회사는 2012. 4. 2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유일한 재산인 주식회사 H의 주식 2,545,499주를 15억 원에 처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2012. 9. 24. F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9881호)을 제기하였다. F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1.경 소외 회사의 동의하에 위 15억 원 중 5억 원을 I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I은 그 무렵 위 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였다.

③ 그 후 소외 회사는 F으로부터 2014. 7. 21. 550만 원, 2014. 8. 11.경 4,000만 원, 2015. 5. 19. 5,000만 원, 2015. 6. 17. 1,000만 원 등 합계 1억 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채무변제는 2014. 8. 11.경 F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4,000만 원을 G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해준 것이다.

④ G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를 제외한 일부 채권자들에게는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하였지만 원고는 채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2012. 2.경 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위 주식대금 15억 원 중 6억 550만 원을 지급받아 5억 원은 I에게, 4,000만 원은 피고에게 각 변제하였다. 피고 역시 양수금 8,000만 원 중 절반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민, 판사 이근수, 판사 박남천